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목 차>

1.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이상진
	담당부서 (과)	기업환경정책과		직급	사무관
	국장	박종찬		연락처	042-724-7449
	과장	신재경		이메일	maestro247@korea.kr

2023. 10. .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2.규제조문	제41조의2 제1항								
	3.위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4.유형	강화(간이형)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조합의 이사장 공석이 1년 이상 지속시 의사결정 주체가 없어 ‘총회 미개최’ 사례가 발생하거나, - 자본잠식 1년 이상 지속된 조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수행 능력이 상실되어 ‘공동사업 미수행’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실태조사 대상 조합이 되는 사례 빈발 ○ (정부개입 필요성)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 필요								
	7.규제내용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및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 다만, 자본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 적용 제외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중소기업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조합 설립 및 사업운용 주체</td><td>·중소기업중앙회 1개 ·연합회 39개 (22년) ·조합 518개 (22년) * 전국 216개, 지방 302개 ·사업조합 369개(22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합 설립 및 사업운용 주체	·중소기업중앙회 1개 ·연합회 39개 (22년) ·조합 518개 (22년) * 전국 216개, 지방 302개 ·사업조합 369개(22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합 설립 및 사업운용 주체	·중소기업중앙회 1개 ·연합회 39개 (22년) ·조합 518개 (22년) * 전국 216개, 지방 302개 ·사업조합 369개(22년)								
9.규제목표	○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정상화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법 제1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 ----- ----- -----.
1. 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2. 법 제43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 설>	4. <u>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u>
<신 설>	5. <u>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제도개요) 주무관청은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 활동상황 조사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조합 지정 및 관보게재 제도 운용중
- (추진배경) 이사장 공석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조합 운영상의 의사결정 주체가 없어 '총회 미개최' 사례가 발생하거나,
 - 자본잠식 1년 이상 지속된 조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수행 능력이 상실되어 '공동사업 미수행'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실태조사* 실시대상 조합이 되는 사례 빈발

* '총회 미개최', '공동사업 미수행' 등의 사유로 '23년도 실태조사 실시대상 조합의 54%(106개 조합중 57개)가 1년 이상 이사장 공석인 조합으로 확인됨

** 상장기업의 경우 완전자본잠식시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조치

□ 정부개입 필요성

- 운영 상황이 부실한 조합에 대해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하여 협동 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내용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및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 다만,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 적용 제외

<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 이사가장이 1년 이상 공석이거나,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조합은 실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 조합으로서
-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는 협동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 중기중앙회의 지속적인 개정 의견제출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운영 조합의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 **(수단)** 휴면조합 지정요건에 ‘이사가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및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필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의사결정 주체가 없어 총회 미개최, 공동사업 미수행 등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 자본 전액 잠식후 1년 이상 경과시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므로
- 조합측에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되어 휴면조합 지정에 대한 피규제자의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휴면조합에 대한 지정 및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9.2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23.9.27 : 개정안에 대하여 자체 법제검토 결과 의견제출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부실운영 조합의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